

소프트웨어중심대학 사업단운영규정

제1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본 대학교에 설치한 소프트웨어중심대학 사업단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명칭) 본 센터는 가천대학교 소프트웨어중심대학 사업단 (이하, '사업단') 이라 부른다.

제3조(소재 및 설치) 본 센터는 가천대학교(이하 '본교'라 한다) 내에 둔다.

제2장 사 업

제4조(본 사업단의 목적) 본 사업단은 소프트웨어중심대학 사업의 운영을 관할한다.

제5조(사업) 본 사업단은 제4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.

1. 소프트웨어학과 전공자 대상 교육
2. 소프트웨어학과와 산업체 사이의 (산학과제 수행 포함) 산학협력
3. 본교 모든 소프트웨어 비전공자를 대상으로 소프트웨어 기초 교육
4. 본교 모든 소프트웨어 비전공 학과 중 소프트웨어 연계/부/복수전공 교육
5. 지역사회 초중고 학생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소프트웨어 가치확산을 위한 대외 교육 활동
6. 기타 본 사업단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

제3장 조 직

제6조(구성) ①본 사업단은 사업단장, 영역별 책임교수, 영역별 참여교수, 행정

4-1-33~2 제4편 부속기관

지원 조직 등으로 구성하며, 본 사업단의 운영을 위해 운영간사를 둘 수 있다.

②본 사업단은 운영기구로 총괄운영위원회를 둔다.

③본 사업단은 교과과정 혁신 위원회, 자문위원회, 소프트웨어전공 위원회, 소프트웨어융합전공 위원회, 비전공 소프트웨어기초 위원회, 산학협력 R&D 위원회, 성과관리 위원회 등의 위원회를 두어 사업단장 및 총괄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.

④ 본 사업단은 부속조직으로 소프트웨어교육센터와 소프트웨어연구센터를 둔다.

⑤ 소프트웨어교육센터는 비전공 소프트웨어기초 교육의 기획 및 운영, 그리고 지역사회 소프트웨어 가치확산 등의 활동을 할 수 있으며, 소프트웨어연구센터에서는 산학협력 R&D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.

제7조(자격 및 임명) ①사업단장은 본 대학교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, 임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한다.

②본 사업단에는 소관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행정연구원 등 행정보조원을 둘 수 있다.

제8조(직무) ① 사업단장은 본 사업단을 대표하며 사업단 업무를 총괄한다.

②행정보조원은 일반 사무를 처리하고 사업단 소속 교수의 사업단 관련 업무를 보조한다.

제9조(직원) 사업단은 소프트웨어 교육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전문 직원을 둘 수 있다.

제4장 운영위원회

제10조(설치) 본 사업단에는 사업 및 운영에 관한 심의, 자문기구로 운영위원회를 둔다.

제11조(조직) ①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위원장은 사업단장이 겸임하고, 운영위원회를 대표한다.

③위원회의 위원은 본 대학교 교원 중에서 위원장이 5인 이내로 임명하며,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
④위원회의 위원은 영역별 책임교수, 운영간사를 포함한다.

⑤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 중 한 명을 운영간사로 두며,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
제12조(업무 및 권한)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 한다.

1. 사업단 운영의 기본계획 수립·변경 및 추진상황에 대한 점검·평가에 관한 사항
2. 각 사업의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
3. 사업단의 예산수립, 결산, 결과 보고에 관한 사항
4. 사업단 규정의 제·개정에 관한 사항
5. 기타 본 사업단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

제13조(소집과 회의) ①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되며, 정기회의는 매 학기 초에 소집하고,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.

②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③정기회의는 회의 1주일 전에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제14조(회의록) 회의록은 회의 참석위원의 서명 날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.

제5장 재 정

제15조(경비 및 연구비) 본 사업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연구비는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사업비, 용역사업비, 기부금,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.

제16조(회계연도) 본 사업단의 회계연도는 가천대학교의 회계연도와 같다.

제17조(발전기금) 본 사업단은 발전기금을 적립할 수 있다.

제6장 보 칙

제18조(운영세칙) 본 사업단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단장이 따로 정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5년 10월 01일부터 시행한다.